

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 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#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1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3. 10.31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해 사용료·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 인하)에 따라 사용료, 대부료, 교환차금,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매각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함.
- 나.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 위탁이라 하고 일반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관리라고 정의함에 따라 조례 문구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- 다. 사용자부담 완화 및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조정하고자 함.

## 2. 개정근거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 (법률 제10006호, 2010.2.4., 일부 개정)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의3, 제14조, 제19조, 제32조, 제39조, 제45조, 제81조, 제82조(대통령령 제24631호, 2013. 6. 21, 일부 개정)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, 교환차금,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(안 제37조제4항, 제62조제2항, 제62조의 2, 제62조의 3)

-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, 교환차금,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(4%)
-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(4%)

나.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(안 제40조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~6% 분할납부 이자율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3~6%였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2~4%로 조정

다.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부기간 조정 (제37조제1항)

-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
- 둘째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

**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**

**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**

#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행정재산의 위탁관리”를 “행정재산의 관리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”를 “법 제27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 및 제22조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매년”을 “첫째 년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, 둘째 년도 이후의 대부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4퍼센트”를 “2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퍼센트”를 각각 “4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3퍼센트”를 “2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5퍼센트”를 “3퍼센트”로 한다.

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)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·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

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.

제6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3(교환차금의 분할납부)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,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)

- ① 제37조제4항의 신설규정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·매각계약 및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62조제2항, 제62조의3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·교환하는 변상금 및 교환차금부터 적용한다.
- ③ 제62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4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제37조(대부료등의 납기)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,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4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----- ----- -----법 제27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 및 제2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7조(대부료등의 납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첫째 년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, 둘째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</p>

는 경우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.

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·연립주택·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

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퍼센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4퍼센트 -----  
-----  
-----

③ -----  
-----

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62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4퍼센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퍼센트-----  
-----  
-----.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3퍼센트-----  
-----  
-----.

제62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



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62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)  
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·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.

<신 설>

제62조의3(교환차금의 분할납부)  
영 제11조의3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